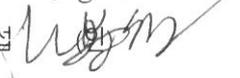


## 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자 : 장비담당 또는 점검자
- 확인자 : 신월119안전센터장

김영민   
 노봉섭 

본부(부서명)	제조사	제조일	용기번호	사용 충전기 (관리번호, 제조일 등)
양천소방서(신월)	산청	2016. 03	1086KM200	

근거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사유 등)
7호 가항 4)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 매 6개월마다(21.3.9./청 지침) 새로운 공기로 교체	(적) / 부	
7호 가항 6)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 공기호흡기 용기 25MPa,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	(적) / 부	
7호 가항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 세척, 충전,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	(적) / 부	
8호 가항 (정기검사 등)	○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	(적) / 부	
8호 다항. 3) (정기검사 등)	○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 부식, 이물질, 수분 등 육안검사	(적) / 부	
9호 나항 및 다항 (용기 등의 파기)	○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 절단, 원형 가공불가 조치, 공인검사기관 의뢰	(적) / 부	
11호 가항 4) (정비실의 설치)	○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식별표지 포함)	(적) / 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제1호	○ 용기 재검사 여부 - 10년 이하는 5년, 10년 초과는 3년 -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	(적) / 부	

※ 공기호흡기 용기 체크리스트는 본부에서 표본 점검(20개) 후 작성 보관  
 ※ 확인자는 해당 부서의 장(센터장·구조대장 등)